



제2171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0 7 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0 8 호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1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0 9 호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1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0 호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1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0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2 호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3 호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8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4 호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5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5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1 1 6 호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2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07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지원사업 (안 제6조)
- 본인부담금 지원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위탁 (안 제8조,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02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오용환 · 김은숙 ·
유광희 · 서점원 · 전용호 · 장덕수 ·
박정하 · 육은아 의원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지원사업 (안 제6조)
- 본인부담금 지원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위탁 (안 제8조,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조, 제2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아이돌봄사”는 2026년 4월 22일까지는 “아이돌보미”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소요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08호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보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검·조사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3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전용호 의원
 찬 성 자 : 이유경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주민 및 지역 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보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점검·조사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물환경보전법」 제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사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 등이 보급받은 유용미생물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유용미생물(EM) 배양액 생산을 위한 EM 원액 및 부자재 등 구입, 관리인력 임금 지급,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나. 관련 조문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EM환경센터 운영 : 건축물 규모 130m² (앵고개로 488)
- 시설·장비 : 배양기 1기, 발효기 10기, 공급기 42기, 운반차량 1대
- 관리인력 : 기간제근로자 2인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총 계	94,716	
EM 원액 및 부자재 등 구입	25,000	연간 400톤 생산기준
관리인력 임금 등 지급	52,296	기간제근로자 2인 기준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17,42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 홍 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출			94,716	94,716	94,716	94,716	94,716	473,580
EM 생산 및 보급사업 (구비)			94,716	94,716	94,716	94,716	94,716	473,58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4,716	94,716	94,716	94,716	94,716	473,580
	지방세		94,716	94,716	94,716	94,716	94,716	473,58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09호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남동구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서점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4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서점원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남동구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주거기본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아. 그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신청 지원
 5.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
 6.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도시국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참고자료]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0호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정신적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사업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5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정신적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사업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자살자의 유족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2. 자살유족 등에 대한 초기평가 및 애도상담
3.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4.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5.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6. 자살유족 발굴 등을 위한 자살예방서비스 연계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남동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 - 111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부여(안 제16조제9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7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소속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부여(안 제16조제9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16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오 근 선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2호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해 후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사업 및 지원사항(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8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해 후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사업 및 지원사항(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남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문화예술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사업 추진 시 재정 소요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문화예술후원 범위, 방법, 지원 규모에 대한 선검토가 필요하므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향후 안 제5조에 의거 문화예술후원 정책 시행 시, 사업 및 지원 규모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는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3호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제3조)
- 영상진흥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제작 장소의 보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9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제3조)
- 영상진흥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제작 장소의 보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7조)

☐ 본 문: “별첨”

☐ 참고자료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 ·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 · 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 · 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 · 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 ·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구청장은 남동구의 역사적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 ·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따라 영상산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재정 소요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영상산업 지원 범위, 방법, 규모에 대한 선검토가 필요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향후 안 제5조에 의거 영상산업 지원 정책 시, 사업 및 지원 규모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4호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 고유의 자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추진(안 제4조~제5조)
-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사항(안 제6조~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0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 고유의 자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추진(안 제4조~제5조)
-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사항(안 제6조~제7조)

☐ 본 문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대학·연구기관
·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의 비용은 규모, 성격, 지역특성 등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기술적 추계에 한계가 있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황 수 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5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부여(안 제13조제9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6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 부여(안 제13조제9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13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개정안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 김 정 훈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16호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 시행)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3조)
-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제8조)
- 통합지원 창구·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01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유광희·반미선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 시행)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제8조)
- 통합지원 창구·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남동구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
 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남동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
 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동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및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제공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남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돌봄통합지원법(2026. 3. 27.시행) 대비 기본 서비스 확충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확충

나. 추계 결과

- 총소요액: 금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 산출내역: 300,000,000원(2026년 가내시 금액) × 5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국고보조금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225,000	225,000	1,125,000
	보조금	국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교부세	시비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	-	-	-	-	-
	소 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지방세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참고자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 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

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

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

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